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

서울에너지공사

받는곳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희롱예방지침 제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나.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2. 위와 관련, 사규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받은 ‘성희롱 예방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성희롱 예방지침 전문	1부.
	2. 성희롱 예방지침 비교검토표	1부.
	3. 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 업무처리 매뉴얼	1부.
	4.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사원

허수진

김사흠

정록성

김용남

박진성